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 12. 제 천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 1. 13.
다. 상 정 일 자 : 2011. 1. 19.(제17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민원지적과장)

가. 제안이유

-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방문고지 하는 경우 고지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완식)

-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 도로법 제18조는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토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는 도로명주소의 고지사항으로 종전의 주소, 새로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과 그 부여사유,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및 기간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 규정에는 도로명 주소의 고지 수단과 방법에 관한 규정은 정하고있지 않는바, 방문고지의 필요성 및 수단과 방법, 실비변상기준등에 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답변자 : 민원지적과장)

- 질의) 향후 방문고지 추진계획은? (김꽃임 위원)
답변)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이통장을 통하여 배부할 계획임
질의) 실비지급 방법은? (김꽃임 위원)
답변) 하루 20,000원씩, 5일간/1인, 관내 이통장은 460명으로 46,000천원 소요예상 됨.
질의) 수령확인은 어떤방법으로 계획하는지? (김꽃임 위원)
답변) 가정별로 수령싸인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질의) 싸인을 받는 규정이 있는지? (조덕희 위원)
답변) 규정은 없으나 세대별로 고지한 도로명주소 사실확인을 위하여 싸인을 받고자 함.
질의) 우편발송계획은 있는지? (조덕희 위원)
답변) 방문고지시 수령자가 없는 세대에는 우편발송할 계획이며, 우편수령이 안되는 세대는 공무원이 직접전달토록 하겠습니다.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